

11. 금감원의 업무추진 관련 검사·제재관련 규정·지침

붙임 참조

(붙임 2)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 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1호
개 정 2001. 2.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10호
개 정 2001.11.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91호
개 정 2002. 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28호
개 정 2003. 3. 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15호
개 정 2003. 9.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42호
개 정 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10호
개 정 2004. 5. 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2호
개 정 2004.12.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60호
개 정 2005. 7.1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31호
개 정 2005. 8.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44호
개 정 2005. 1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1호
개 정 2005. 12.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9호
개 정 2005. 12.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9호
개 정 2006. 8.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6- 5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에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신탁업법

바. 증권거래법

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2004.3.5>

- 아. 선물거래법
 - 자. 사 제 <2004.3.5>
 - 차. 보험업법
 - 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 파. 상호저축은행법
 - 하. 신용협동조합법
 - 거. 농업협동조합법
 -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 더. 산림조합법
 -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 처. 산업발전법
 - 커. 외국환거래법
 - 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펴. 금융지주회사법
 -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설 2004.5.7>
 - 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신설 2004.5.7>
 - 노. 선박투자회사법 <신설 2004.5.7>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해산, 영업의 인·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구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관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3.3.6>
 3. "종합검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부문검사"라 함은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11.3>
 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11.3>
 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치요구사항"이라 함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유의사항, 지적사항, 현지조치사항 등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경영유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

- 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0. "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조치의뢰·주의·변상·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3.5., 2005.8.31>
 11. "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3.5>
 12. "정보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금융기관의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
 13. "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14. "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상시감시"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 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5.11.3>
 16. "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예안법(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1.3>
 17. "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18.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

④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 2 장 검 사 운 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검사실시)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감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

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구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제10조 삭제 <2004.3.5>

제11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독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사결과와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와 보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독기구설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종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로서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검사에 대하여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앞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개정 2004.3.5>

나. 조치의뢰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토록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04.3.5>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개정 2005.8.31>

라. 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05.8.31>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5.8.31>

3. 현지조치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감사 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은 2월 이내, 문책사항에 주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기한이내 <개정 2004.3.5., 2005.8.31.>

나. 조치의뢰·주의·변상·개선사항 : 3월 이내 <개정 2004.3.5., 2005.8.31.>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징계 제한) ① 금융기관은 감독원의 검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기관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칙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 제660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의2 삭 제 <2005.11.3>

제 4 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개정 2006. 8.31.>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6. 8.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8.31.>
-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개정 2006.8.31.>
 - 가. 삭 제 <2006.8.31.>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 기관경고
 -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저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제 <2004.12.30>

마. 삭 제 <2004.3.5>

8. 삭 제 <2004.3.5>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31.>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개정 2004.3.5., 2005.8.31.>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해임권고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감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신설 2005.8.31. >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 ③ 금감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②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금감위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4.3.5.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감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 ③ 삭 제 <2001.2.28>
- ④ 삭 제 <2001.2.28>

⑤ 삭 제 <2001.2.28>

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제21조(기타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당해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변상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제22조(제재효과) ① 삭 제 <2003.9.13>

②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업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각 감독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③ 임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신설 2005.8.31. >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부실여신 발생 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그 제재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3.5>

1.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2.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3. 여신취급시 충분한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5. 우수한 경영 등으로 경영실태의 종합평가등급이 전기대비 1등급이상 향상된 경우
6.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

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재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②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책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⑤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압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이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신설 2004.3.5>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①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30>

② 제①항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압원(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임원과 동 임원이 참여하는 여신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본점 부서장 포함) 위주로 제재한다. <신설 2004.12.30>

③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유가증권 운용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이를 면책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1.2.28>

제3절 제재의 병과조치 등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

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또는 과징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면직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28>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 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① 금융업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동일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행위로 발생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32조(변상시의 병과)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변상요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절 제재절차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개정 2006.8.31.>

제34조(제재절차)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감독원장이 조치한다.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를 하거나 금감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독원장은 상당한 기간(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의견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3.5]

제35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사무위임) 금감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감독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제36조(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감독원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8.31.>

제37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서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6.8.31.>

② 제19조제2항의 조치의뢰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에 예정된 직원은 당해 조치의뢰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8.31.>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6.8.31.>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6.8.31.>
-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6.8.31.>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39조(내부통제)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점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2. 어음·수표, 예금증서 등의 중요증서와 현금, 중요인장, 채권서류 등에 대한 보관관리

제40조(자체감사 등) ① 금융기관은 부당영업행위 및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또는 분기 감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중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처리의견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게 준하여 처리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 금융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손실처리
- ④ 금융기관은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금융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기타 관계자 명의로 대출취급할 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개정 2004.5.7>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제 6 장 보 칙

제43조 삭 제 <2004.3.5>

제44조(증권·선물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행한 다음 각호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권고를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1. 증권거래법 제42조 및 동조 준용규정, 제52조의3, 제107조,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선물거래법 제22조, 제31조, 제48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4. 삭 제 <2004.3.5>

제45조 삭 제 <2004.3.5>

제46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대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제재의 특례)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동 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개선 또는 직무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다른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3(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은행법 제48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은행법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에 의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 조건 등의 이행상황 확인

2. 전환대상자의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 등 <신설 2003.3.6>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4(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②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금액, 검사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③ 감독원장은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3.6>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

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감면·병과조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3조 및 제26조를 제외한다)·제3절·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1.3]

제48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제20조의 규정은 1999. 6. 30.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4.5.7>

부 칙(2002. 5. 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증권업감독규정 <별표3>, 선물업감독규정 <별표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4>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문책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제재를 가중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2004. 5. 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 칙(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의조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례) 개정규정 제22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05. 11.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부 칙(2006. 8. 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1.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취급한 여신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대출, 용도의 유용 대출 등)
2. 정관·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부적격자(휴폐업 업체, 연체자 등)에 대한 여신
(타인명의 이용 등 우회대출 등 포함)
3. 신용조사를 부당하게 생략하거나 신용조사 또는 여신심사의 의견이 “여신 부적정”임에도 무리하게 취급한 여신
4. 적정 여신한도 초과 부당취급
(한도 미산정, 추정매출액 부풀리기, 담보물 과다평가 등 포함)
5.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급한 여신
6.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제6항·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

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기준금액	기본과징금
10억원 이하	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1조원 초과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9,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조원)×법정최고부과비율×5단계 기본부과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단계)		× 7/20
5천만원 초과 25억원 이하 (3단계)		× 7/40
2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단계)		× 7/80
10억원 초과 (5단계)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다. (3), (4),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cdot \text{가중금액} = \text{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times (\text{위반일수}-1) \times 0.1\% \text{ 또는 }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증권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다. (1), (2)를 제외하고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위의 6. 가., 나. 및 다.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의 50%이하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로 한다.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3><개정 2001.2.28, 2005.12.15>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1.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최근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당해 금융기관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지시에 추종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지 서식>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검사서 번호 (문서번호) :	기관부점명 :
정리(재정리)요구 접수일 :	작성 일자 :
검사 기준 일 :	작성 부점장 : 인
조치요구 구분 :	자체감사 담당부서장 : 인 (자체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조치요구내용(요약) :	
정리 및 조치결과 : (완결, 정상화, 미정리)	
정리 및 조치내용 :	

- 주 : 1) 검사서의 정리대상 조치요구사항 건별로 작성하여 보고하며, 입증자료를 첨부함
 2) 조치요구사항의 내용대로 정리된 경우 '완결',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화',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리' 로 구분함
 3) 미정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개별사유서를 첨부함
 4) 미정리된 사항이나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여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함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등록수수료 등)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가.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산정원칙

- 대부업자에 대한 매회 검사수수료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내에서 다음에서 정한 검사원 1인의 1일 검사수수료에 검사원 수 및 검사일수를 곱한 금액과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로서 검사원이 해당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검사착수 전일 및 검사종료일 익일을 검사일수에 포함)
 - 검사기관과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35,000원
 -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90,000원(최종일은 50,000원)
 - * 다만, 인근 시에 위치한 경우로서 검사원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부과
- 검사원 1인당 교통비는 다음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만 적용)
 - 철도임 : 1등정액 기준
 - 항공임 : 일반석 기준(서울↔제주 구간만 인정)
 - 철도·항공편 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비기준

나. 검사수수료 부과 및 납부시기

- 검사수수료는 매분기 검사실시분을 일괄하여 납부대상 대부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분기익월 20일까지 부과고지 한다.

-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 검사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본점에 일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만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지점에 직접 부과한다.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감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감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위법·부당 행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3. 기타제재

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포함>·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정	2000.12.20
개 정	2001. 2.12
개 정	2001. 8.17
개 정	2001.11.13
개 정	2002. 5.10
개 정	2003. 2.28
개 정	2004. 2.27
개 정	2004. 4.30
개 정	2004. 7.23
개 정	2005. 8.26
개 정	2005.10.28
개 정	2006. 8.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지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점, 출장소, 지부, 지회, 대리점 등 본점 이외의 영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4. “점포”라 함은 본점 또는 1개의 부서, 지점, 대리점 등 검사실시 단위를 말한다.
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6. “검사사후관리”라 함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04.4.30>

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 <신설 2004.4.30>
9. "검사실시부서장"이라 함은 검사국장 또는 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업무담당부서장 및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신설 2004.4.30>

제3조(검사원) ① 규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독원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검사원의 제척)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검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 2 장 검 사 운 영

제1절 검 사 계 획

제4조(검사계획)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국장은 각 검사국별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1.11.13>

③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를 위한 연간검사계획은 주검사부서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각 검사국은 이를 연간검사계획에 포함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신설 2004.4.30>

④ 제2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점포 및 점포수,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⑤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

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2004.4.30>

- 제5조(중점검사사항 운영)** ① 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검사국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제2절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제6조(상시감시업무) ①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1.11.13>

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자료
3. 임직원 면담 및 조사출장 결과 자료 <신설 2005.10.28>
4. 금융기관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 <신설 2005.10.28>
5. 감사원 등이 수집한 정보·건의사항 <개정 2005.10.28>
6. 기타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검사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05.10.28>

② 감독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제6조의2(임직원 면담) 감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0.28]

제6조의3(조사출장) ① 감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범위를 차등화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13>

1. 경영개선권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앞 경영개선요구 건의·경영개선명령 건의
2. 경영실태평가 등급 조정
3. 감사계획수립 및 중점감사항목에 반영
4. 감사실시
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개정 2005.10.28>
6. 요약서·양해각서 체결 <개정 2004.4.30>

제8조(상시감시자료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자료는 감독 및 감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감시자료의 보안 및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① 검사국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
2. 상시감시자료
3. 유관부서의 확인요청 사항
4. 과거 사고·민원발생 내용
5. 정보 및 건의사항
6. 기타 조사 및 분석자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유관부서 등에 제출되는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국장이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요구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개정 2004.4.30>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를 추가·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제10조(감사사전준비협의회) ① 검사국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전에 유관부서 등과 검사사전준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검사총괄담당부서, 제재심의담당부서, 관련 검사국 및 기타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13, 개정 2005.10.28>

③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계획의 개요 및 중점검사사항
2. 금융기관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
3. 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
4. 자체감사부서의 활동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검사) ① 검사국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임점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제2장 제3절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전교육)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전에 소속 검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검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검사실시 목적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2. 상시감시 또는 검사사전준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사착안사항
3. 검사원복무수칙 등 준수사항
4. 기타 검사기법, 감독원장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제13조(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을 관련부서(지원 포함)와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감독원 직원은 금융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미확인사항 포함)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통보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3절 검 사 실 시

제14조(검사실시의 품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업무담당부서장은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국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2004.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대상 금융기관
 3. 검사기준일(부문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의 범위
 5.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6. 검사실시 기간
 7.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
 8. 예상 소요경비
 9. 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
 10. 과거 검사실시상황
 11. 기타 참고사항
-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합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한다.
<개정 2001.11.13, 2004.4.30>
1. 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
 2.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3. 검사사항의 적정성
 4. 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
 5. 검사실시내용의 검사관리시스템 입력여부 <신설 2004.4.30>
-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검사대상기간)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간은 검사종류, 전번 검사기준일, 검사인력, 검사일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6조(검사반 편성) ①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반은 검사업무의 분장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검사반장을 둔다.
②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2. 검사원의 업무분장
3.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제17조(검사 착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할 경우 장표 및 서류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④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감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통보서) ① 감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감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4.30>

② 제1항의 감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제19조(감사진행상황 협의) ① 감사원은 매일의 감사진행상황을 감사반장과 협의함과 아울러 주요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원의 감사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수시로 감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임원앞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봉인) ① 감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① 감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③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1.11.13>

제22조(타점포 검사) ① 감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감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결과 입증자료)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05.10.28>

1. 확인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2. 문답서 또는 질문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3. 문서 및 장표의 사본

검사결과 입증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05.10.28>

② 제1항 제2호의 질문서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실시부서장 명의로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장(본점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제25조(경영실태평가) ① 검사국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검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감위에 경영개선요구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경영면담 등) ① 종합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1. 경영진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장, 검사국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전에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가. 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방침

나. 감독 및 검사 정책

다.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상 취약점,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라. 조치요구(예정)사항

마. 애로 및 건의사항

바. 금융환경 및 금융기관의 경영전망 등

2. 이사회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장, 검사국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후 경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가. 감독 및 검사정책

나. 경영상 취약점, 경영진 면담시 협의된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다. 경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사의 관심필요사항

라. 금융기관의 경영정책과 전망 등

② 부문검사의 경우 검사반장은 검사를 종료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검사반장이 언급할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의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견서, 제2호에 의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며,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삭제 〈2002.5.15〉

제 3 장 검사결과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절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작성 등

제29조(귀임 보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서 작성)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문검사로서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현지조치) 검사반장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은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 기재한다.

제32조(고발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 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10.28>

1.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 동일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감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04.2.27>

제34조(검사결과와 심사의뢰)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요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4.4.30, 개정 2005.10.28>

제35조(지적불문사항의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청구한 사항중 심사과정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금융거래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검사서 통보시점과 근접하는 등 통보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검사결과와 금감위 보고)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감위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본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말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본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제2절 사후관리 등

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 가. 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다.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거나 미정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정리에정일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정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한다.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 1.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2. 정리가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 3. 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검사자료의 정리)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 1. 검사자료 표지
- 2. 검사실시상황
- 3. 금융기관 제출자료
- 4. 검사결과 입증자료
- 5. 기타 검사원 참고자료

제39조의2(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배부대상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2.28, 개정 2004.4.30>

제40조(준용) 감독원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검 사 통 할

제41조(검사진도 분석)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분기별 검사진도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실시부서별 검사진도를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 검사진도분석은 제42조제3항의 검사업무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같을 수 있다. <개정 2001.11.13>

제41조의2(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①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결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실시 주관
2.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 등 유관부서와의 검사정보 공유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주검사부서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간 연결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4.30]

제42조(검사관련 통계관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 및 조치내역, 검사사후관리 사항 등을 검사관리시스템에 적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실시 상황, 경영실태 평가결과, 검사지적사항,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검사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주요 조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업무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제43조(검사유관부서협의회)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또는 검사국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내 유관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개최목적 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적의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국 및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결과 주요 조치요구사항,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건의사항의 협의
2. 자산건전성분류결과의 협의·조정
3. 상시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4. 검사계획의 수립·조정
5. 유관부서의 검사국에 대한 검사확인 및 협조요망사항
6. 감독·검사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사업무 관련사항

제44조(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검사기법의 개발, 보급 등 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사

기법 연구 검사원의 선정을 검사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검사원의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검사기법은 검사원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01.11.13>

제 4 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직원 제재 등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27>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26.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5.8.26., 2006.8.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8.31.>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 <개정 2006.8.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개정 2006.8.31.>
4. 소규모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으로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6조(직원 등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5.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7조(제재효과) ① 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인사상의 징계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관련내규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제재효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규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제48조(징계기간의 산정) ① 제47조제1항의 제재효과에 의한 징계조치의 기간은 징계

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승급은 징계일 이후의 첫 예정일로부터 기산하고 승격은 동 제재 조치 기간중 이를 불허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최저 승격소요기간의 계산은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직위별 최저 근속기간에 징계종류별 승격불허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재효과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효과의 발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직의 경우 : 즉시 효과 발생

2. 정직의 경우

가. 정직기간 : 즉시 효과 발생. 다만, 정직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정직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효과 발생

나. 신분상 및 급여상 제재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3. 감봉 및 견책의 경우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은 후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종류별 승격·승급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1.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

2.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직

3.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4.30>

6. 규정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감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8.17>
1. 제재대상 직원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제5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05.10.28>
③ 감독원장은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7]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 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7]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운영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2005.8.26.>
3. 삭 제 <2005.8.26.>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절 제재조치의 운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제재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제54조(검사결과 심사·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검사국장, 지원장 또는 감독국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10.28>

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05.10.28>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개정 2005.10.28>
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개정 2005.10.28>
3.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보 1인 <개정 2005.10.28>
4.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001.2.12, 2001.8.17, 2004.2.27>

②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유고시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2.12>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3조제2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②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26.>

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1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심의회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④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감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⑤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2.27>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⑦ 위원은 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⑧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0.28>
- ⑨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심의결과 보고 등)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 ③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8.26.>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7]

제60조(청문)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이의신청)**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06.8.31.>
-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2006.8.31.> <단서신설 2004.4.30>
-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6. 8. 31.>
1. 삭 제 <2006.8.31.>
2. 삭 제 <2006.8.31.>
- ⑦ 삭 제 <2006.8.31.>
- ⑧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10.28, 2006. 8.31.>

제4절 제재조치의 이행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주주총회가 없는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 상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하 같다)에 부의할 때에는 위법·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나. 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개정 2001.8.17>

②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원이 제재조치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절차) ①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금융기관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별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감봉 : 3년

2. 견책 : 2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66조(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① 규정 제40조에 의한 감독원장의 자체감사계획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실패 파악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중요한 감독목적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중개조직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용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은 관할 조합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 즉시보고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즉시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69조(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당 검사국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자체감사결과 조합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05.10.28>

제71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72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례)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72조의2(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 특례)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 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2.28]

제73조(서식의 제정)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1999. 3. 12 이전에 보험, 증권·선물기관이 받은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를, 기관주의는 주의적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증권·선물기관의 임원이 받은 중경고는 문책경고를, 경고는 주의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세칙중 그에 해당하는 세칙이 있을 때에는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01. 2.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8.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3)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1년 11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5)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2년 5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원의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조치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2. 28)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3년 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7)

이 세칙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30)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4년 4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5년 8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의조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개정세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세칙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는 개정세칙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05. 10. 28)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5년 10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원 복무수칙

I. 검사원의 사명

1. 검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공정한 검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금융산업발전의 역군임을 명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검사원은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4. 검사원은 인격도야 및 전문지식 습득과 검사기법의 연구개발 등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II. 검사자세

1. 검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숙지하고 검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자세를 확립한다.
2.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법령, 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검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검사원은 검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7.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8.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 및 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Ⅲ. 검사예절

1.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피검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 겸손한 자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검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Ⅳ. 금지사항

1. 검사원은 검사를 빌미삼아 인사청탁, 여신강요, 사적인 민원해결요청 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검사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검사원은 검사실시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검사원 이외의 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검사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건전한 오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검사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일체의 유가증권 취득 및 주식취득을 위한 일체의 사설펀드 가입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검사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 행위로 인해 감독원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위법·부당의 정도 유형	비위의 도가 극심 하고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 하거나 중과실이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 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면 직	면직 ~ 감봉	견 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 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면직 ~ 정직	감봉 ~ 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 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면직 ~ 감봉	견 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 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정직 ~ 감봉	"
기타 위법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추종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3억원 이하	감봉3월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과실	3억원 이하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견책 이하
	3억원 초과	감봉이하		

② 법 제4조 위반행위(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감봉3월 이상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과실	견책 이하	주의	주의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견책 ~ 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재양정의 가중·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시점 이전에 다음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세칙 제5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2) 감독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적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보다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4>

제재의 효과

종류 구분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신분상조치	파 면	정직기간+18월간 승격·승급불허	감봉기간+12월간 승격·승급불허	6월간 승격·승급불허
근속기간	—	포 함	포 함	포 함

* 승격·승급불허기간은 근로·고용계약 종료후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직으로서 사실상 임원신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포함)에도 적용

<별표 5>

제재양정 감경기준

제재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재양정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제재양정
면 정 감 견 직 직 봉 책	정 감 견 주 직 봉 책 의

<별표 6> 삭 제 <2005.10.28>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출자자여신 등 취급시 제재양정기준

1.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행위

가. 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 임원 및 직원(소액대출 제외)에 대한 대출등과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 등의 취급

나. 제재양정의 운용

제재의 종류	취급합계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해임권고/면직	10%초과
직무정지/정직	5%초과 10%까지
문책경고/감봉	5% 이하

주)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행위

가. 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양정의 운용

제재의 종류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해임권고/면직	50%초과	100%초과
직무정지/정직	30%초과 50%까지	50%초과 100%까지
문책경고/감봉	20%초과 30%까지	30%초과 50%까지
주의적경고/견책	10%초과 20%까지	20%초과 30%까지

주 1)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20%까지, 차주별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액비율 10%까지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조항)

3. 제재양정의 가중 또는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가. 동일인한도 초과취급으로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가중제재한다.
- 다. 저축은행인수 및 출자자금 지원을 위한 출자자대출행위가 검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취급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해임권고(면직)조치할 수 있다.
- 라.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
- 마.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대하여 해당 제재양정기준보다 2단계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1단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착수 이후에 정리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전부 해소한 경우에는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 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기 타

2000.12.8. 이전에 취급된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행위 및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다.

신용협동조합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시 제재양정기준

1. 대상 행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따른 제재양정기준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차주별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개선(改選)/면 직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또는 2억원(5억원) 초과	5% 초과 또는 6억원(18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30% ~ 50%	50% ~ 100%	1.5% ~ 2.5% 또는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2.5%~5% 또는 3억원~6억원(9억원~18억원)
문책경고/감봉	20% ~ 30%	30% ~ 50%	1% ~ 1.5% 또는 0.7억원~1억원(2억원~3억원)	1.5%~2.5% 또는 2억원~3억원(6억원~9억원)
주의적경고/견 책	10% ~ 20%	20% ~ 30%	0.5% ~ 1% 또는 0.3억원~0.7억원(1억원~2억원)	1%~1.5% 또는 1억원~2억원(3억원~6억원)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
- 6) 괄호부분은 금액대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 포함),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양정기준임.

3. 제재양정의 가중 또는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

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가중 제재한다.
- 다. 검사착수 이전에 해당 제재양정기준보다 2단계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1단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착수 이후에 정리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전부 해소한 경우에만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검 사 실 시 통 보 서

제 - - 호

1. 대상기관(점포) :
2. 검 사 종 류 :
3. 검사 실시 일자 : 20 부터 * 이번 검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4. 검 사 원 :
5. 검사 주관 부서 : (전화번호 :)

20

금 융 감 독 원 장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검사 국장
제 목 사고보고(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

1. 사고 발생 부점 :
2. 사고발생일(기간)
3. 사고발견(인지)일 :
4.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사 고 자				
관련 임직원				

5. 사고내용

가. 사고구분: ① 금전사고(횡령,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 등), ②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실명제 위반, 사금융알선, 금품수수, 기타)중 선택

나. 사고내용

다. 사고관련금액 : 백만원(사고와 관련된 총금액)
사 고 금 액 : 백만원(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
손실예상금액 : 백만원(사고금액 - 회수예상금액)

6. 사고발견경위 :

7.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

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계획)
나. 사고금 보전조치(계획)

8. 사고발생원인, 내부통제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가. 사고자 측면 :
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 :

9. 사고발생 부점에 대한 최근 자체감사 내역(감사종류, 감사실시기간, 감사인 직·성명, 주요 지적사항 등)

10. 사고발생 부점의 자체감사 담당책임자 직·성명

11. 기타 참고사항(고지·고발여부, 기타 사고 사후관리상황 등)

○ ○ 기관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 ○ ○ (인)

붙 임 : 1. 인사조치 내용
2. 사고자 인적사항

주 : 1) 본 양식은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 공통으로 사용함.
2) 즉시보고로 기보고한 사고의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의 경우에는 즉시보고의 문서번호를 기록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할 것.